

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지광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04월 06일

발 의 자: 지광천, 박찬원, 심현정(3인)

1. 제안이유

인구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여가시설의 대표적인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2010년에 제정된 기존조례를 현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근거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경로당” 및 “경로당 시설비”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(안 제2조)
- 나.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,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다. 경로당 운영·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을 위한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규정 신설(안 제5조 ~ 제10조)
- 라. 경로당 양곡구입 및 택배비 등 지원 항목 추가 신설(안 제11조)
- 마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범경로당과 모범어르신에 관한 포상규정 신설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0. 02. 07. ~ 2020. 02. 26.(20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0. 01. 10. ~ 2020. 01. 20., 제출된 의견 반영.

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 지급

신설규정 삭제(법제처 유권해석 근거)

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에 따라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2. “경로당 시설비”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, 매입비, 임차료 및 개·보수비 등을 말한다.
3. “경로당 운영비”란 주·부식비, 수선 유지관리비, 전기료, 전화료, TV 시청료, 상하수도 사용료,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노인복지법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책무)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.

②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,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) 군수는 경로당 운영·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경로당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평창군의회 의원,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경로복지담당이 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
2.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(대상시설 및 지원금액 기준 설정 등)
3.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(調整) 등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경로당 지원)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단,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)

1. 경로당 시설비
2. 경로당 운영비

3. 경로당 냉·난방비
 4.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
 5. 경로당 물품 구입비
 6. 살균소독 및 방역비
 7.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비
 8. 경로당 양곡구입 및 택배비
 9.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
 10.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
 11.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설치 및 유지·관리비
 12.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
- ② 군수는 경로당 시설규모, 이용인원,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,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금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

제13조(포상)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경로당과 모범어르신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련법률]

□ 노인복지법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<개정 2007. 8. 3.>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4. 삭제 <2011. 6. 7.>

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 ①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

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2. 12. 20., 2005. 6. 8., 2005. 10. 17., 2006. 7. 3., 2008. 1. 28., 2010. 9. 1., 2015. 1. 16., 2016. 12. 30., 2019. 7. 5.>

1.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
2. 위치도·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(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)
3.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(경로당을 제외한다)
4. 사업계획서 1부(경로당은 제외한다)
5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) 각 1부
6. 삭제 <2019. 7. 5.>

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·건물등기부 등본·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. <신설 2006. 7. 3., 2008. 1. 28., 2010. 2. 24., 2010. 9. 1., 2016. 12. 30., 2019. 7. 5.>

③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1999. 8. 25., 2006. 7. 3., 2008. 1. 28., 2016. 12. 30., 2019. 7. 5., 2019. 9. 27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)

- 군수는 경로당 운영·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경로당운영위원회를 둔다.

○ 제11조(경로당 지원)

-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·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지광천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6